

부산광역시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사유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가 강화되었고,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제, 전자제품의 회수의무화 등이 신설되었으며,
- 위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시 별도의 이행명령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관계법령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, 제21조, 제22조, 제41조

### 3. 주요골자

- 분리배출표시가 필요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
(안 제14조제4호)
-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된 같은 종류의 제품의 무상회수 요구에 판매업자가 불응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6호)
-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가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
(안 제14조제7호)

#### 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건은

-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강화와 빈용기 보증금제, 분리배출표시 및 전자제품의 회수의무화등을 생활화 하므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며,
-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규제와 의무조항을 관련법에 명문화 하므로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따라서 위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3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